

제 978 호

1983. 8.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공 보 관 감 영 근

전 화 : 725-7834

인 책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훈 령

- 제 597 호 : 서울특별시종합상황실운영규정 3
- 제 598 호 : 서울특별시경찰서소방서파출소회근하달문서처리및절차규정
개정규정 4
- 제 599 호 : 서울특별시장물품표발급및장물수사담당자업무취급규정개정
규정 6

◎ 고 시

- 제 40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지적승
인및지적승인 12

< 이 면 제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담당자	상임기원	부위원장	위촉장

제 40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3
제 41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4
제 41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5
제 412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5
제 41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6
제 414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3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	18
제 415 호 : 골재운반을위한선박의운항허가고시	18
제 41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9
제 417 호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지적승인	20
제 41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고시	20
제 41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고시	21
제 42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고시	22
제 421 호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허가	22
제 42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23

◎ 공 고

제 434 호 : 케이, 에스표시정지처분해 제공고	24
제 436 호 : 가로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및환지에 정지지정공고	24
제 437 호 : 투기 과열지구지정공고	25
제 43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25
제 439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계획 공람공고	27
제 44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완료공고	28
제 44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29
제 44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31
제 44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32
제 445 호 : 도로공사계획공고	33
제 446 호 : 투기 과열지구지정공고	35

◎ 사 령

훈 령

서울특별시 종합상황실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 년 8 월 8 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훈령제 597 호

서울특별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합상황실 (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및 관장) 상황실은 서울특별시청 본관에 두며 내무국장의 책임하에 행정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일과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관장한다.

제 3 조 (기능)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하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각종

사고 및 주민동향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

2. 보고된 상황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개통을 통하여 보고 (통보)한 후 종결시까지 관리

3. 국장, 구청장, 사업소장의 소재 파악 및 연락업무

4. 기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조 (상황보고대상) 상황실에 보고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 산불, 각종집단민원등 시민 생활에 안녕을 해치는 각종 사고 및 동향

2.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공사장, 건축물등의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3. 청소, 수도, 공해, 무허가건물발생, 전염병발생 등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

4. 기타 각종 시민여론 및 선행사례 등

제 5 조 (보고체계)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동향을 인지 즉시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에서는 개통을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지휘보고를 할 수 있다.

제 6 조 (근무요령) 상황실요원은 5명으로 편성하되 상황반장은 5급으로 보하고 근무반원은 6 - 7급으로 보한다. (전화민원선고센터 담당직원겸직) 다만, 일과후 및 공휴일에는 당

직자로 보한다.

제 7 조 (근무요령) ① 상황실 근무시에
는 상황반장의 지휘아래 상황보고와
전화민원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중 상황실 근무자는
당직개시 30 분전까지 상황반장으로
부터 상황업무를 인수받아, 익일
09:00 까지 근무한 후 상황반장에
게 인제하여야 한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기록
관리하여 내무국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상황관리) ①주요상황은 상황
판에 기록관리하고 그 상황이 종료
될때까지 진행상황을 기록 유지하여
야 한다.

②접수된 상황은 그 중요도와 긴급
성을 감안하여 보고, 통보, 전파등
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③주요상황은 각 해당부서에 통보처
리토록한 후 종결시까지 진행상황,
결과조치등을 계속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④상황을 통보받은 각 해당부서에서
는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
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외근하달문서처리 및 절차규정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598 호

서울특별시경찰서파출소외근하달문서
처리및절차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경찰서, 파출소 외근하
달문서처리 및 절차규정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서파출소외근하달
문서처리및절차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따로 정한
것을 빼고는 경찰서장이 파출소에
시달하는 문서의 작성 처리 및 여러
가지 조사문서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달문서의 통제) ①각과에
서 파출소에 시달하기 위하여 작성
된 문서는 외근계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야간에 시달하여야할 문서는 상황
실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한다.

③법령관계문서 경비, 작전문서, 특
별지시, 긴급지시, 수배, 회보 및 기
타 내용을 조정할 수 없는 문서
는 외근계장의 통제없이 시행할수
있다.

제 3 조 (조 정) 외근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제한다.

1. 각 과에서 시달하는 문서
2. 이미 시달한 문서와의 중복여부
3. 전언 통신문 및 여러가지 조사문서

제 4 조 (일일업무지시 및 보고) ① 긴급한 문서의 모든 문서는 일일업무지시서 (별지제 1 호서식) 에 각과별 소관문서를 요약하여 일일 1 건 문서로 시달한다.

② 일일업무지시서는 보안과장의 결재를 받아 통제인 (별지제 2 호서식) 을 찍어야 한다.

제 5 조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감독규정에 따른 감독자는 시달된 일일업무지시서에 따라 외근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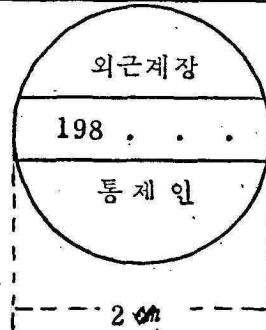
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호서식)

일 일 업 무 지 시 서								
구분 과별	전 명	문 서 번 호	내 용	기 간	결 과 보 고	처 리	비 고	

발신 경찰서장

(제 2 호서식)



서울특별시장 물품표발급 및 장물수사 담당자 업무취급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훈령 제 599 호

서울특별시장물품표발급및장물수사 담당자업무취급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장물품표 발급 및 장물수사담당자 업무취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장물품표 발급 및 장물수사에 관해서는 범죄 수사규범, 범죄수법 관리규정에 정한 것을 빼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장물품표는 원칙적으로 경찰국장(형사과장주관)이 작성한다.

제 3 조 중요장물품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해품에 대하여 작성한다.

1. 중요문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품
2. 외교사절등에 관련된 사건의 피해품, 기타 사회적으로 큰사건의 피해품
3. 강도살인등의 중요사건에 관한 피해품

4. 다액 절도 또는 특이한 수법, 삼습적이라고 인정되는 침입절도 사건의 피해품

5. 기타 중요사건 또는 특이한 사건의 피해품

제 4 조 보통 장물품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간단한 회답 또는 문자만으로 특징을 표시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한 장물품표(이하 “종합 장물품표”라 한다)를 발급한다.

1. 시제, 텔레비전, 녹음기, 악기, 보석품류
2. 사진기류, 재봉기, 타자기, 계산기
3. 자동차, 오토바이 및 그 부속품류
4. 골동품류, 고서화류

제 5 조 장물품표(특별중요 장물품표는 제외)는 경찰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찰서장이 장물품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 1 호서식(종합장물품표는 별지제 2 호서식)에 따라 칼라사진 또는 특징을 표시한 피해품 도안등을 경찰국장(형사과장경유)에게 제출하여 물품표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서장이 스스로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장물품표 1부를 첨부하여 경찰국장(형사과장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①경찰서장은 특별 중요장물품표의 배부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수사담당자에게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피해품의 증별에 따라 업소별로 배부하도록 하고 기타 장물품표는 수사담당자, 또는 파출소 경찰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른시, 도로부터 장물수배를 받았을 때에는 장물품표의 빈자리에 경찰서장 직인을 찍어 제 1 항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①장물품표 원부의 기재는 자체분과 다른서의 것으로 분류한다.

② 장물품표는 형사계 및 파출소에서 책임구역내의 대상업소에 배부하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①경찰서장은 특별 중요장물품표 및 기타 장물품표 해당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품표해당품 발견보고서(별지 제 4 호 서식)에 따라 수사본부장 또는 경찰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① 경찰서 수사담당자는 장물품표의 배부 및 장물 수사대상자 파악, 기타 장물수사에 필요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가 장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압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물발견 수사보고서

2. 피해 확인서

3. 전당자술서 또는 매입(고물상) 자술서

4. 압수조서

5. 관계자의 진술서 또는 자술서

6. 기타 참고사항

제 11 조 장물수사담당자는 다음 관계자료를 정비하고 장물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장물 사범 경력카드 작성자료

2. 관내 장물품표 배부한곳, 기타 수배관계된곳의 업종별 명부

3. 각 경찰서별 장물품표 배부자료

4. 숨어서 영업하는자, 장물상습취득자, 노상매입자, 귀금속가공업자 귀금속감정업자 등의 실태, 장물 유출상태, 기타 장물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 12 조 경찰서장은 매년 2 회 이상(6월말, 12월말) 장물품표 배부 대상업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경찰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국장은 그 이동 상황을 각 경찰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 13 조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찰국장(형사과장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물수사 담당자 이동사항

(별지 제 5 호 서식)

2. 지난달분의 장물발견 상황

(별지 제 6 호 서식)

3. 기타 특이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 1호〉			서울경찰국 호 제 특별중요증요보통 장물품표	
번호	품명	품질형상특징	기타피해품	1. 금성 라디오 1대 트랜지스터 8석-803 2. 비스레스 18K 1개 증양에 하-트형 배달이 달려있음
1	신사용오바 코트 시가 원	빠이로지, 라구랑형(3.매유) 짜 중고품 내측과 포켓트 상측 기 에 피해자 김광진의 이름이 붙어 있으며 무측에 제품,점 포 순창양복점의 상호가 붙어 있 음 있음 센터-센터 있음	자 년 월 일 시 분 자 년 월 일 시 분	사이 절도(빈집털이)피해품 (전화 번) 서울경찰국장 (전화 번) 서울경찰국형사과장 (전화 번) 동 해당제장 (전화 번) 경찰서형사제장 (전화 번)
2	부인용 백금반지 신사용 금 4분반지 (인지) 시가 원	정면 신(사인) 정면 모양 사 18 측면 K18 방금 표시있음 반지 16 호	주: 1. 장물 품표 중별에 있어서 해당 제목은() 팔호로서 표시한다. 2. 형상특징은 될수 있는대로 도해하고 수리 손상 개소 마-크 기호번호 등에 의하여 동류품과 식 별할 수 있도록 기재할것. 3. 품표에서는 기재예와 같이 발부 경찰서장의 명 의 이외에 경찰국장 또는 경찰국형사과장 명의를 병기하여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명하는 효력을 갖게 한다. 4. 품표서 규정은 16절지를 사용하되 가급적 량 질을 사용할 것.	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경찰서 제 호 서울경찰국형사과장 수령인 년 월 일 동 해당제장 경찰서형사제장
3	부인용 팔목시계 시가 원	8형 금장중 3침 16명 중고시 준 표시있음 1. 문자판 2. 12와 1자사이에 약간의 흠이있음. 3. 오르바드(자동용) 4. 후색 해사빈그 중고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0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여객자동차
정류장) 변경지적승인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59 호 (83.7.
15) 및 동고시 제 390 호 (83.7.
26) 와 동고시 제 391 호 (83.7.26)
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
설 학교, 도로, 여객자동차정류장을 도

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지적승인한다.

2. 관계 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
제인에게 보인다.

1983.8.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평)	비 고
기정	학 교	강서구내발산동산 59-2 일대	33,131	
변경	학 교	"	33,398	증 267

나. 도시계획시설 (여객 자동차 정류장) 변경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평)	비 고
기정	여객자동차정류장	강서구목동 404-3	2,807	
변경	"	"	감 2,807	폐 지
신설	"	강서구신정동 737-6 일대	8,786	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지적승인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3	12	25	강서구내발산동산 58	강서구내발산동 436-3	
변경	중로	3	12	215	"	"	연장축소
신설	소로	1	10	74	공항동 4-124 일대	공항동 4-152 일대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 장	시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3	4	36	화곡동 338-16 일대	화곡동 338-23 일대	
기정	소로	3	6	136	방화동 168-18 일대	방화동 187-1 일대	
변경	소로	2	8	136	"	"	폭원 확장

라. 지적승인도면 1 부.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0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한다.

1983.8.8

서울특별시장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좌 동
2. 사업주체	영등포구 여의도동 1-885 (주) 한 양 대표 배종렬 건설부 주택조합장 김보근	"
3. 사업시행의위치 및 면적 규 모 가. 위 치 나. 면 적 다. 건설규모	강동구가락동산 76-1 외 174 필지 100,536.4 m^2 아파트 12 층 16 동 1,440 세대 상 가 2 층 1 동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 아파트 12 층 16 동 1,320 세대 주 구 중 심 시 설 (3 층 1 동 7,956.72 m^2)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82.9 - 84.12.31	좌 동

◎서울특별시고시제 410 호

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

1983.8.8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주요변경승인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주체	용산구한강로 3 가 65-228 (주)삼익주택 대표 이종록	용산구한강로 3 가 65.228 (주)삼익주택 대표 이종록 중구남대문로 3 가 110 번지 한국은행총재 하영기
위 치	강동구명일동산 15-1 외 138 필지	강동구명일동 15 번지 외 99 필지
면 적	82,645.00 m^2	112,053.00 m^2
규 모	아파트 12 층 2 동, 15 층 9 동 1,620 세대 상가 2 층 1 동 및 부대복리 시설	아파트 12 층 3 동, 15 층 13 동 2,250 세대 [삼익주택분 1,950 세대 한국은행분 300 세대 상가 4 층 1 동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 기 간	82.11-84.12.31	좌 등

◎서울특별시고시제 41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90(83.7.26)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된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사

항에 따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8.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표시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소 굴	3	6m	70 m	신당동 304-626	신당동 387-44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12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20 호 (82.8.14) 로 결정 및 동고시 제 196 호 (83.4.7)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동시행령 제 6 조 권한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8.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동작구상도동 213의 1 일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상도종합시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강남구방배동 756 의 3 호

(주)일호유통 대표 김 욱

라. 사업시행규모 : 2,992 m²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 허가일로부터 30 일내

준공예정일 : 84.3.30

바.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생략)

사. 위치 및 평면도

별첨 (생략) .

토 지 이 용 조 서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동작구상도동 213-	전	1,392	강남구 방배본동	
" 213-2	대지	337	756 의 3 김 옥	
" 213-39	"	1,065	"	
" 214-106	"	198	"	
계		2,992		

◎서울특별시고시제 41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 (74.3.15)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도로)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판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위치 : 강동구거여동 170-105
(영풍국교주변)

강동구만천동 190-160

2. 사업의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도로, 하수도)

3. 사업규모

1) 도로포장 37.26 a

2) 하수도공사 D= 800mm L= 170 m
D= 600mm L= 467.5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1 년

6. 사용토는 수용할재산의소재지 : 별첨

7. 토지토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조서 (영풍국교주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판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거여동	170-105	도로	1,154	동대문구청량리동 205-296	안수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제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거여동	178-20	도로	190	성동구화양동 24-19	김 명 신			
"	180-2	전	225	중구예장동 8-44	송 철 은			
"	178-121	도로	6	강동구거여동 178-6	주 승 택			
"	178-6	대	376	거여동 178-6	"			

토지조서 (마천동 190-163 간 하수도 개량공사)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제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마천2동	146-5	전	557	마천동 114-3	양성찬외 2인			
"	144-14	대	206	포천군침산면초성리	이 필 이			
"	145-7	대	29	마천동 145-2	임 재 균			
"	144-12	대	109	165	구 영 오			
"	140-44	대	207	175	최죽성외 62인			
"	172-2	도	132	166	구 본 탁			
"	173-28	대	155	166	구 본 탁			
"	173-41	대	79	전주시	최후열외 1인			
"	173-20	대	496	신반포 11-104	김 광 연			
"	173-19	대	192	"	"			
"	173-61	대	245	중곡동 107-56	이 창 희			
"	191-40	도	12	마천동 191-33	김 정 대			
"	191-18	대	63	홍제동 19-25	손 오 영			
"	191-8	도	215	"	"			
"	191-20	대	79	"	"			
"	190-9	대	19	149-5	한 정 군			
"	170-27	도	500	신설동 164-19	구 자 창			
"	167-5	도	225	전능동	최 윤 이			
"	166-11	대	66	218	최 한 영			
"	163-20	대	7	주교동 148	이달준외 1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마천2동	163-16	대	13	163-16	최 용 환			
"	163-3	대	89	의주 2 가 171	김창호외 1 인			
"	196-9	대	9	마천동 197	구 성 모			
"	163-11	도	162	의주 2 가 171	이창호외 1 인			

◎서울특별시고시제 414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31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18 호(83.4.14)로 시행인가 고시된 마포로 제 1 구역제 31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고시 제 367 호(83.7.20)로 사업

계획이 변경결정 고시 되었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제 2 항, 제 15 조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인가 변경 고시한다

1983. 8. 11

서울특별시장

가. 고시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 폐 율	45 % 이하	46 % 이하	
용 적 율	670 % 이하	676 % 이하	
층 수	15 층 이하	17 층 이하	높이 58.3 m 변동없음

나. 변경사유

건축시설의 실시 설계로 인하여 면적이 일부 증가되고 옥탑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상되어 층수로 계산됨

◎서울특별시고시제 415 호

- 골재 운반을 위한 선박의 운항허가 고시 -

당시 한강구역내에 하천법 제 25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여 채취된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

의 운항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 25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 8.11

서울특별시장

○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의 운항허가내용

공 구	점용수허가자	점 용 위 치	점 용 목 적	점 용 내 역
4	진 흥 기 업 (주) 대 표 박영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촌동 173번지앞 한강 (제 4 공구역내)	골 재 운 반	예인선 - 4 대 바지선 - 4 대

○ 점용허가기간 : 1983년 8월 11일 - 1984년 2월 29일

* 허가기간은 한강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0 호 (83.7.
26)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
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3년 8월 11 일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 로	2	8-12 m	270 m	홍은 9-339 일대	홍은 9-276 일대	

별첨 : 표시 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17 호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1 호(82.4.16) 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 8. 11.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공공공지	중구 신당동 36-222 일대	2,295 m^2	

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1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 호(82.1.4)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사업시행지 : 성동구행당동 17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한양대학교 시설일부 개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1) 시행면적 : 388,721 평방미터

2) 사업변경내역

가) 기 준

건축면적 - 34,162.80 평방미터

연 면 적 - 184,288.49 "

동 수 - 35 동

나) 변경후

건축면적 - 33,700.54 평방미터

연 면 적 - 182,928.04 "

동 수 - 35 동

다) 변경내용 (금회허가분)

1983. 8. 11.

서울특별시장

○ 동수-1동 개축 (1-1공학관
철거후 대학원 신축)

○ 건축면적 - 1,126.80 m^2 (철거
: 1,589.06 m^2)

○ 연면적 - 6,111.75 m^2 (철거 :
7,472.20 m^2)

○ 층수-지하 1층, 지상 5층 (철
거 : 지상 6층)

○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성북구 행당동 17

성명 :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 준공예정일 : 1984. 3. 31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사용할 토지 : 별첨과 같음.
(생략)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한양학
원 (수용할 토지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41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6 호 (81.
11.9)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

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신여자
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
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돈암동 17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성신여자대학교 통로확장

다. 사업시행규모

1) 시행면적 : 70,769 평방미터

2) 사업내역

• 도서관 옆 통로확장

구조물 설치 135.8 m^2 (폭 3.0
- 5.3 m 연장 : 36 m)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성북구 돈암동 173-1

성명 :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리숙중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3. 12. 30.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사용할 토지 : 별첨과 같음 (생략)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성신학원
(수용할 토지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42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고시

1. 건설부 고시 제 229 호 (83.7.6)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된 서강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마포구신수동 1-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서강대학교 시설 확충

다. 사업시행규모

1) 시행면적 : 156,683 평방미터

2) 사업내역

• 건축면적 - 2,857.54 평방미터

• 연면적 - 15,113.55 "

• 동 수 - 2 동 신축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동별 층수 및 면적

경상사회학관 : 지하 1 층, 지상 5 층
(연 14,386.05 m^2)

학군단 : 지하 1 층, 지상 2 층
(연 727.50 m^2)

라. 사업시행자 주소 : 마포구신수동 1-1

성명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장
이 한 택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4.7.30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수용할 토지없음)

◎서울시고시제 421 호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허가

1. 건설부고시 제 124 호 (71.3.2)
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된 성동구 성수 1 가 685-102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12.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성수동 1가 685-102호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

다. 사업의 규모 : 면적 268,640.85㎡ 시설연면적 2,370㎡ (마사, 숙소, 창고증축)

라. 사업시행자 : 성동구 성수동 1가 685-20 한국마사회 회장 : 이 건 영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83. 8. . .

준공 - 8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생략

사.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면 :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22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 및 제 7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13.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연세대학교	서대문구신촌동 산 9 의 1 일대	807,019	일 부 해 제
변 경	"	"	"	(면적 변경 없음 : 도면정정)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34 호

케이 . 에스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케이 . 에스 표시정지처분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3. 8. 5.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국제다이아몬드공업(주)
2. 소재지 : 서울구로구신도림동 291-187'
3. 대표자 : 김 정 환
4. 허가번호 : 제 2597 호
5. 규격번호 : KSE3107
6. 품 명 : 다이아몬드 코어비트
7. 종류등급 : 씨페이스세토
8. 처분일자 : '83. 7. 6.
9. 해제일자 : '83. 8. 6.

◎ 서울특별시공고제 436 호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및
환지에정지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134 호 ('82.3.20) 로 사업시행인가된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본 공고로 동법 제 57 조 제 1 항에 의한 환지의 사용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며,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환지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수익을 부여한다.

1983. 8. 8.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명 :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시행면적 : 7,452,003 m^2
(2,254,231 평)

다.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강동구가락동, 방이동, 오금동, 거여동, 문정동, 장지동, 마천동, 둔촌동, 성내동, 풍납동, 이동 각일부

라. 기 타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관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37 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3.8.10.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지정구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452 번지의 351 필지
2. 면 적 : 95,718.5 m^2
3. 아파트명 : 개포지구 한보미도아파트 2 차
4. 규 모 : 아파트 14 층 11 동

1,232 세대

5. 사업주체 : 한보상사(주) 대표 정태수
등록업자 (서울시등록제 78-394 호)
한보주택(주) 대표 정태수
지정업자 (건설부 지정 제 41 호)

◎서울특별시공고제 43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505 호 (78.9.28) 로 지적 승인된 산천동 56-35 ~ 82 24 간의 1 개소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응하고져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련 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

1983. 8. 11.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 가. 사업시행지 : 용산구산천동 13-5 ~ 신창동 98-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산천동 56
-35 ~ 82-24 간의 1 개소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

다. 사업의 규모 : B = 3 → 8M L = 6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
일 - 1983년 12월 31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 별첨 토지조서, 건물조사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설명 : 별첨 토지조사,
건물조서 참조
첨부 :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각 1 부.

건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구 조	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제 인 주 소 성 명	
1	산천동	13-1	목 조 와 즈	9.8	산천동 13-1	이 삼 실
2	"	13-2	"	7.4	"	이 삼 실
3	"	16-1	연 와 조	1.4	산천동 16-1	권 천 복
		-3	세 멘 와 즈			
4	"	16-2	목 조 와 즈	15.0	산천동 16-2	전 미 란
5	"	17-1	"	12.0	산천동 16-3	김 기 성
6	신창동	56-36	목 조 와 즈	9.7	신창동 56-36	이 형 만
			세 멘 부 러 조	1.7		
7	"	96	목 조 와 즈	12	신창동 96	오 명 학 외 1 인
					중구광희동 1 가 126	신 재 형
8	"	97	목 조 도 단 즈	30	신창동 97-1	이 충 성
9	"	98	목 조 초 즈	81	신창동 98	최 완 봉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1	산천동	13-5	대	21.1	산천동 13-1	이삼실
2	"	13-6	"	21.3	"	이삼실
3	"	14-2	도로	7.1		서울시
4	"	16-5	대	22.9	산천동 16-1	권천복
5	"	16-6	"	6.9	산천동 16-2	전미란
6	"	17-4	"	2.3	산천동 16-3	김기성
7	"	17-2	"	3.0	"	김기성
8	신창동	56-64	"	37.10	신창동 56-36	이형만
9	"	56-65	"	26.70	신창동 56-35	오국환
					경기도시흥군남면산본리 781	김진석
10	"	97-1	"	33.0	신창동 97-1	이충성
11	"	96-3	"	10.10	신창동 96	오명환
					중구광희동 1가 126	신재형
12	"	96-4	"	5.30	신창동 96	오명환
					중구광희동 1가 126	신재형
13	"	98-1	"	47.30	신창동 98	최완봉
14	"	98-3	"	83.30	"	최완봉

◎서울특별시공고제 439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3 호 (71.10.28) 로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허가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983. 8. 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동 722 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

다. 사업의 규모

○시 설 면 적 : 9,906.9 m^2

○건축계획면적 : 2,968.2 m^2

○금회건축면적 : 1,512 m^2

○건축계획연면적 : 11,907 m^2

○금회건축연면적 : 4,536 m^2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동 654 부력

영동중앙물산(주)대표 김 한 보

마. 사업예정기간

○착수년월일 : '83. 8. .

○준공예정일 : '84.12.30.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일의 주소, 성명 (생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도시정비과에 문의바람 (설계도서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4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06 호 (82.10.

6)로 시행허가한 도시계획사업 (학교)에 대하여 사업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66 조 3 과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 8.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중구장충동 2 가 197-1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시설확충

다. 사업규모

○시행면적 : 107,974 m^2

○건축계획 : 3,271.98 "

• 연면적 : 17,000.88 m^2

• 동 수 : 2동 (지하1층, 지상5층)

• 용 도 : 교사

라. 사업시행기간 : 1981년 11월 26일 - 83년 10월 30일

마. 허가근거 : 서울특별시고시제 422 호 (81.11.25) 와 동고시 제 406 호 (82.10. 6)

바.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필동 3 가 26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박기종

사. 준공도면 :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4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983.8.11

서울특별시장

1. 건설부고시 제 186 호 (62.12.20) 로 재정비 고시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코저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코자 이를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일 같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공고장소 : 중구청도시정비과, 토목과
○ 공고기간 : 1983.8.11 - 1983.8.25 (14 일간)

공 랑 개 요

1. 사업장위치 : 중구신당동 314-20 ~ 321-33 간 도로와 중구신당동 47-6 - 52 의 7 간도로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 : 신당동소방도로 개설

3. 사업의 규모 : 폭 8 m

연장 102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 : 인가일분부터 83.12.31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 별향토지조서

7. 토지소유자 및 도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이해관계인 해당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중구신당동 314 의 20 - 321 의 33 구간 (토지분조서)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신당동	314-62	대	2(m)	신당동 295-27	최 익 현	
"	314-56	"	46	" 233-26	이 성 레	
"	314-66	"	3	국 유 지		
"	314-65	"	1	신당동 314-27	이 훈 형	
"	314-28	"	17	" 314-27	이 세 립	
"	318-5	"	43	" 318-1	박 기 영	
"	314-64	"	3	" 57-484	박 병 태	
"	317-14	"	1	국 유 지		

동 명	지 적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신 당 동	317-15	대	13	신당동 317-9 박 병 택	
"	316-1	"	66	국 유 지	
"	316-12	"	129	"	
"	316-2	"	3	"	
"	316-3	"	10	신당동 316-3 전 선 태	
"	316-14	"	3	" 316-3 "	
"	294-74	"	3	국유지 (내무부)	
"	294-25	도 로	20	"	

○ 건물의 조서

소 재 지	건물의 종 류	면 적 (㎡)	구조및규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신당동 314-1	주 택	23.14	목조도단층	신당동 314-1	이 성 태
" 314-63	"	16	"	" 314-63	이 세 립
" 314-27	"	4	목조세면와층	" 314-27	
" 318-5	"	19.83	"	" 318-5	박 기 영
" 314-37	"	5	"	" 314-37	박 병 태
" 316-2	"	15	목조도단층	" 316-2	황 희 탁
" "	"	29.75	목 조 와 층	" "	양 영 식
" "	"	36.36	"	" "	국 유 지
" "	"	19.83	"	" "	"

○ 신당동 47-5 ~ 52-7 구간도로 (토지조서)

동 명	지 적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신 당 동	52-375	대	178	신당동 53 이 병 찬	
"	44-30	구	40	서 울 시	
"	47-18	대	73	남대문로 2가5 한국전력	
"	44-31	"	31	합정동 417-14 안 차 수	
"	44-29	도	38	서 울 시	
"	282-2	대	54	"	

등 명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신 당 동	282-97	대	1	신 당 동 282-58 이 재 호	
"	52-374	"	10	" 52-276 윤 문 희	
"	52-274	"	8	" " "	
"	52-376	"	9	" 52-275 안승진의 2인	

○ 건물조서

소 재 지	건물의 종 류	면 적 (㎡)	규격및구조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신 당 동 62-55	주 택	41	목 조 와 줍	신 당 동 62-55	최 윤 석
" "	"	50	"	" "	최 병 옥
" "	"	20	"	" "	최 지 철
" 52-375	"	49	목조세면화줍	" 52-375	이 병 찬
" 44-29	"	6	"	" 44-29	한 중 화
" 47-17	"	16	"	" 47-17	이 재 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44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 랑 공 고

1. 서울시고시 제 355 호 (80.10.25)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잠실 구획정리 지구 및 일반지구 일부 토지인 강동구풍납동 238 번지의 3필 지 토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 조 2 항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 공사 1 부 및 강동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강동구청

나. 공람기간 : 1983.8.17-1983.9.5

(14 일간)

1983.8.17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1. 사업시행지 : 강동구풍납동 238 번지
외 3 필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신설도로
3. 사업규모 : 폭원 10 연장 190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3.8 - 1983.12

6. 수용할토지 : 별첨조서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
소, 성명 : 별첨.

보 상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물건의종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풍납동 238	전	313	토 지	중구신당동 370-29	최 상덕	
2	"	"	163	"	"	"	
3	풍납동 237-13	잡	91	"	강동구천호동 142-10	이 찬주	
4	"	"	92	"	"	"	
5	풍납동 410-1	대	49	"	강동구풍납동 동서 연립 B 동 202	박 봉건 외 인	
6	풍납동 410	"	52	"	강동구풍납동 336-4 연립 1-303	이 재 형 외 21인	
계			760 ㎡				

○서울특별시공고제 44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고 177(62.12.8)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대흥동 500 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고져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25조
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합
니다.

2.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
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3. 관계 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
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가. 마포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83.8.8-8.22(14일간)

1983.8.12

서울특별시

— 공 랑 개 요 — 1.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가. 사업장위치 : 대흥동 500-11-염리동 164-3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대흥동 500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 폭 20m, 연장 102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 : 1983. 9 . . - 84.1. . 바.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 국 , 공유지 (별첨)
---	--	---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 고
1	대흥동 458-8	도로	367.6	서울특별시	
2	" 500-11	"	3,250.6	국 유 지	
3	염리동 164-3	"	7,109.8	"	
4	대흥동 490-2	"	105.5	서울특별시	

저 축 건물 (무 허 가 및 도 로 점 용) 현 황

연번	주 소	지적(㎡)	성 명	비 고
1	대흥동 500-11	126.6	신광성 (미성 유아원)	
2	"	259.7	박종국	
3	"	15	주표근 (연탄가게)	
4	"	48	대한노인회마포지부제3분회	
5	대흥동 500-5	32	김정이	
6	" 494-8 (500-11)	146.4	서순혁	
7	"	63.8	김병만	

○서울특별시공고제 445 호

도로공사계획공고

1. 도로법시행령제 24 조의 3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2에 의거 도로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관계 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 한다.

1983.8.12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공사 계획 조서

도로의종류 및 노선명	공 사 명	공 사 구 간	시 행 자	공사기간
소로 2 류	불광천변도로 포장공사	증산교-북가좌 2 20-1	서대문구청	83.8- 83.11
소로 4 류	홍제동 82 번지 "	홍제동 82-128, 156, 336	"	"
대로 3 류	연희입체교차로-구청간 보도 부력포설 공사	연희동 212-619	"	"
소로 4 류	창천동 429-487 간 하수도공사	창천동 429-487 간	"	"
중로 2 류	북가좌 1 동사무소주변	북가좌 1 동사무소주변	"	"
소로 3 류	북가좌 1 동 145 "	북가좌 1 동 145	"	"
소로 3 류	연희여중주변의 1 개소주변 연희여중주변 1 개소 남가좌 2 동 329 1 개소	연희여중 주변 남가좌 2 동 329 주변	"	"
소로 4 류	홍은동 57 주변의 2 개소주변 홍은 1 동 57 주변 2 개소 " 24-25 간주변 홍은 2 동 산 1 번지주변	홍은동 57 번지 " 24-71 번지 " 산 1 번지	"	"
소로 4 류	현저동 4 지내의 2 개소 주변 현저동 4 지내 하수도공사 천연(냉천)동 76 " 북아현 3 동 1-422, 1-465 간 하수도공사	현저동 4 지내 천연(냉천)동 76 지내 북아현 3 동 1-422~1-465 간	"	"

도로의종류 및 로선명	공 사 명	공 사 구 간	시 행 자	공사기간
소 로 3 류	홍제동 6지내의 1개소 하수도공사 [홍제 3동 6지내 " " 홍제동 79 " "	홍제동 6지내 홍제동 79 "	서대문구청	1983.8-83.11
"	충정로동 240-109 간 "	충정로동 240-109	"	"
대 로 1 류 (의주로)	" 209-310 간 "	충정로동 209-310간	"	"

나. 관제도면 : 생략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
이오니 본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유관사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
사 기간중에 시행토록 하시기 바람

고등 241 의 21 외 16 필지

2. 면 적 : 23,763 m²

3. 아파트명 : 서빙고동신동아아파트 2 차

4. 규 모 : 아파트 13층 3동 260 세대

5. 사업주체 : 신동아건설 (주)

대표 유 상 군

◎서울특별시공고제 446 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83.8.12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지정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

사 령

◎1983년 8월 6일자

령제 301 호

정 회 선

지방별정직 6 급상당 (시사편찬원) 에 임
함. 1호봉에 급함.

기획담당관 근무를 명함.

박 종 원

지방별정직 7 급상당 (교압가스관리기사)
에 임함. 7호봉에 급함.

은평구 근무를 명함.

김 명 구	◎ 1983 년 8 월 10 일자	령제 302 호
지방별정직 8 급상당 (공해측정기사) 에 임함. 5 호봉에 급함.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정 대 진	
김 효 상	지하철운영 사업소 17 호봉 지방기계기사	
지방별정직 8 급상당 (공해측정기사) 에 임함. 3 호봉에 급함.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우 재 명	
	교 통 과 3 호봉 지방통신장시보 (기능 7 등급)	

◎ 1983 년 8 월 8 일자

령제 303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최 대 교	감사관사회지도담당관직대	관악구재무국장	지방서기관
신 태 희	내무국시민과장직대	기획관리실통제전산담당관	서 기 관
김 병 용	" 문화과장직대	서대문구시민국장	지방서기관
윤 우 길	교통국교통기획과장	내무국시민과장	서 기 관
김 명 주	상하수국업무과장	종로구총무국장	"
박 한 경	종로구총무국장	감사관사회지도담당관	"
송 용 석	서대문구시민국장	내 무 국	지방서기관
지 건 홍	구로구시민국장	서대문구건설국장	"
주 화 종	관악구재무국장	마포구건설국장	"
천 남 수	강남구총무국장	내무국문화과장	서 기 관

령제 304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조 광 권	통제전산담당관직대	행정과행정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후 직	서대문구건설국장직대	관악구총무과장	"

서울 특별 시장

령제 306 호	◎ 1983 년 8 월 9 일자	제 307 호
상하수국업무과장 서 기 관 업 주 창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대 통 령	근로청소년회관 이 두 영 지방별정직 7 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83 년 8 월 10 일자

제 308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황 재 린	영등포병원	마포구수도관리과	지방행정주사
이 문 재	구 로 구	영등포병원	"
이 후 경	성 동 구	강동구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윤 하 원	세종문화회관	내무국시민과	"
정은애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강동구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강영희	강 동 구	서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한 유	관 악 구	성동구하왕 2 동	지방행정서기

제 309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안 교 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경찰국면허과	지방별정직 7 급상당
최 재 춘	"	"	" 9 급상당

◎ 1983 년 8 월 11 일자

령제 311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최 후 복	만남의광장운영요원을 해제함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구 연	"	도 분 구	지방행정주사보시보
오 형 철	"	성 동 구	"
안 철 식	"	서대문구	"
최 광 임	"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시보
한 은 주	"	"	"

◎ 1983 년 8 월 16 일 자			령 제 31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허 필 만	서울특별시전입을 면함 산업경제국 양정과 근무를 명함.	농수산부양정국회계과	행정주사
◎ 1983 년 8 월 11 일 자			령 제 31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신 동 휘	구 로 구	환 경 과	지방보건기사
전 재 성	동 대 문 구	구 로 구	"
민 현 기	환경녹지국	도봉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 1983 년 8 월 12 일 자			령 제 31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유 갑 식	지방철도원 (운수 9 등급) 에 임함. 7 호봉에 급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령 제 31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성 현	감사관감사담당관	성동구기획감사과	지방행정주사보
윤 병 국	"	관악구 "	"
고 광 순	재 무 국	강남구청소과	지방행정주사
고 석 창	"	" 새마을과	"
최 영 환	"	영등포구세무 2 과	"
이 경 섭	중 구	재무국회계과	"
김 기 일	강 남 구	" 성정과	"
황 선 화	강 동 구	" 세무지도과	"
정 연 학	환경녹지국공원과	영등포구주택과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정 태 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중구도시정비과	지방행정주사
국 명 호	" (지방행정주사보)	강서구산업과	행정주사보
박 중 대	"	동작구주택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영 일	"	관악구민방위과	"
원 윤 영	"	구로구총무과	지방행정서기
진 정 근	"	종로구재무과	"
문 재 만	"	" 기획감사과	"
최 성 균	"	용산구토목과	"
조 한 준	"	은평구응암 1 동	"
윤 점 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작구사당 1 동	"
차 응 만	"	은평구갈현동	"
채 성 기	"	" 응암 3 동	"
이 동 섭	자동차관리사업소	강동구잠실 3 동	지방행정서기보
박 상 호	"	동작구세무 1 과	지방행정서기
이 윤 근	"	관악구남현동	"
설 동 환	"	중구세무 2 과	"
염 수 운	지하철운영사업소	시립운동장	지방행정주사
조 남 일	"	예산담당관	"
윤 귀 성	"	성동구도시정비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민 기	"	종로구 "	지방행정서기
문 영 호	"	동대문구 "	"

령제 31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병 열	1983.7.16 자 신규임용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시보
이 호 기	"	성 동 구	"
김 형 만	"	성 북 구	"
정 필 원	"	동 작 구	"

령제 317 호				
성 명	발령부서	호봉	직 급	비 고
정운교	용산구	11호봉	지방행정주사보시보	신규
김재순	"	3호봉	"	"
박철우	동작구	3호봉	"	"
이형철	"	3호봉	"	"

령제 318 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박영수	종합건설본부	운수 2과	기계기좌
이동윤	운수 2과정비제장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기계기좌
서재석	서울대공원관리과장	세종문화회관	"
김영식	" 식물과장	관악구	지방농림기좌
유금종	관악구	구로구	"
박승돈	구로구	중구	지방농림기사
홍은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마포구	"
강기호	"	관악구	"
김청우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지방축산기사
이현우	"	도봉구	"
김병윤	"	동작구	지방건축기사
김기근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지방수의사보
송재윤	"	"	"
윤여황	"	"	"
김영근	"	용산구	"
정태규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이재풍	"	"	"

◎ 1983 년 8 월 22 일 자

령 제 320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심 예 경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부산직할시	지방행정서기보
조 순 자	은평구 근무를 명함.	동래구연산 4 동	
	부산직할시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총무과	

서울특별시 장